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한동훈 (법무부장관) 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·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,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5천만원”을 “5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4천300만원”을 “4천8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천300만원”을 “2천8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2천만원”을 “2천5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1억5천만원”을 “1억6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억3천만원”을 “1억4천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7천만원”을 “8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6천만원”을 “7천5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)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,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)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.	제10조(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서울특별시: <u>5천만원</u>	1. ----- <u>5천500만원</u>
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: <u>4천300만원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4천800만원</u>
3.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)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: <u>2천300만원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800만원</u>
4. 그 밖의 지역: <u>2천만원</u>	4. ----- <u>2천500만원</u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)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.	제11조(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서울특별시: <u>1억5천만원</u>	1. ----- <u>1억6천500만원</u>

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, 세종특별자치시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: <u>1억3천만원</u> 3.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 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한다),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: <u>7천만원</u> 4. 그 밖의 지역: <u>6천만원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억4천500만원</u>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8천500만원</u> 4. ----- <u>7천500만원</u>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법무심의관	
연 락 처	(02) 2110 - 3164
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1 - 4150